

연계연금 선택에 관한 연구 : 사학연금을 중심으로

이순국* 김규림**

〈 초 록 〉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자료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저임금-비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놓인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용어 : 직역연금, 사학연금, 연계연금, 연금사각지대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

제1장 서론

공적연금은 3층 연금 프레임 내에서 1층 노후소득 보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가입 시 수급권이 발생하며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반면, 직역연금의 경우 2015년 이전에는 20년의 수급기간 충족 시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¹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는 궁극적으로 노후 빈곤의 문제와 직결,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 반면, 그간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 요건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수급자의 경우 연금을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왔다.

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이 입법화됨에 따라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입 초기인 2011년 이전 공적연금 연계신청가능 건수가 55,334건인 반면 연금연계 신청은 연간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윤석명·신화연, 2011), 2011년부터 연간 연계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2009~2015년 누적 연계연금 신청자 수는 6,052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201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대상자 및 신청 시기를 확대하는 제도가 개정·도입됨에 따라 2016년 연계연금 신청자 수는 2,57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공적연계연금 포털 사이트, 공동연계급여정보시스템 종합 통계 현황).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 도입 초반에 비하여 연계연금 신청자 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보이고 있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인 연금사각지대 해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보단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반면에 기존 연계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은 20년이라는 수급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사학연금 중 한 제도의 가입경력을 가진 사람은 10년만 가입해도 연금

1. 직역연금은 최소재직기간 충족 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며, 이때 ① 연금, ② 일시금, ③ 연금공제일시금(20년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급하되,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을 받는 형태)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급 자격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를 통해 이동한 사람은 20년을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군인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 요건이 20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직역연금 간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남기창, 2016) 또한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축소되면서 근로기간 중 축적된 연금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퇴직시점 지급의 디폴트옵션이 일시금인 현 규정에서 이를 연금화할 유인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계연금제도의 도입과 현황을 살펴본 후, 사학연금 퇴직자 대상 연계연금 선택행동을 미시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비록 개인특성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연계연금 선택에 대해 실제 개인이 선택한 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제2장 연금제도 변천과 선행연구

1. 연계연금제도 도입과 변천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1960년 공무원연금, 1961년 생활보호제도, 1962년 법정퇴직금 제도 등을 통해 1960년대부터 제한적·부분적으로 도입되었으나, 1988년 국민연금제도,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었다. 현재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제도 등 3층 체계로 구축되어 있으며, 공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각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들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가. 특수직역연금 : 가입기간 합산제도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0년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1996년과 2000년에 도입된 지급개시연령제가 적용되어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2016년부터 지급연령이 점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사망 그리고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해 소득보장을 제공하며, 소득보장성격의 장기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와 부조성격의 단기급여(요양급여, 부조급여)가 급여로 지급된다. 2015년 이전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가입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고, 20년 미만 가입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는 '퇴직연금 = (평균월보수월액) × (0.5+n×0.02)²'와 같은 급여산식에 따라 지급되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그리고 직무상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소득보장을 제공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수준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다.

군인연금은 장교 및 장기복무하사관을 적용대상³으로, 군인이 상당한 연한을 복무한 후 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경우 지급된다. 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경우와 유사하여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퇴직연금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년 미만 재직 시 퇴직일시금이 지급된다. 즉, 20년 재직 시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의 50% 해당하는 급여가 제공되며, 가입기간 1년 추가 시 급여수준은 2%p씩 증가되며, 최고가입기간은 33년까지 인정된다.

국내 특수직역연금에서는 제도 간 이동자에 대한 보장방식으로 재직기간(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직 및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연계방식이란 타 특수직역연금에 적용받았던 종전의 가입기간을 현재 적용받고 있는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종전의 타제도 가입기간을 현재 가입한 제도의 가입기간에 합산해 줌으로써 연금수급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거나 기 수급하고 있는 연금을 증액시켜 주는 방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1967년부터 연계가 가능하여 과거의 공무원 및 군인경력을 인정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83년부터 사학연금제도와 타 특수직역연금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직역연금 간의 연계방식은 대칭형 완전통산방식으로 가입기간과 급여 및 재정에서도 통산이 이루어진다.⁴ 이에 따라 1) 타 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이 100% 인정되고, 2) 타 제도의 적용기간에 의거하여 발생/수급한 일시금 급여를 최종적으로 가입한 제도에 전액 반납한 뒤(재원 이전), 3) 제도이동 전후의 모든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최종가입 제도에서 수급권과 급여액이 결정되어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1990년대 후반 공적연금 재정문제에 대한 논의를 필두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의 3차례 연금 개혁 이후 2015년 2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되었다. 우선 공무원연금의 경우 1995년 개혁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도(60세)가 도입되었고, 부담률 인상(5.5% → 7.5%) 및 조감퇴직연금 제도 등이 이루어졌으며, 재직기간 합산 신청제는 1981년에 폐지되었으나 1995년에 제도입되었다. 2000년 연금개혁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인상과 연금산정기준을 보수인상율기준에서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여율 및 부담률이 인상(7.5% → 8.5%)되고, 연금산정 기준은 최종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되었다. 2009년에는 2010년 이후 가입자에 대하여 급여 산정의 기준을 보수월액 기준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전환하고,

2. n은 20년 초과 가입연수로 최대 33년까지만 인정된다.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은 20년 재직한 공무원 기준 평균월보수월액의 50%에 해당하고, 그 후 1년간 가입기간 추가 시 연금급여액이 2%p만큼 인상되어 30년 재직 시 평균보수월액의 70%에 해당한다.

3.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 및 병에게는 재해보상금만 지급된다.

4. 이용하(200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가입기간 평균으로 조정하여 기존 동일 잣대로 급여산정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재직기간 중 소득'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비용부담율은 기준소득월액 기준 2010년 6.3%에서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 개정되어 2016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은 연금급여율을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은 14%에서 18%로 인상하였으며,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단계적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원연금 보험료 상한 소득액을 평균소득액의 기존 1.8배에서 1.6배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사학연금 역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였으며, 군인연금법의 경우 2013년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연금수급 개시연령 관련 사항은 군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정되지 않고, 20년 이상 근무 시 퇴역하는 즉시 지급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3대 직역연금 주요 내용

구 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설립연도	1960년	1975년	1963년	
가입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기여율	14%	14%	14%	
	정부7%, 공무원7%	사무직원 : 본인7%, 법인7% 교원 : 본인7%, 법인4.117%, 국가2.883%	정부7%, 군인7%	
연계연금제도 도입 연도	1967년	1983년	1967년	
연계연금 법적근거 조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 2항 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2조(재직기간의 합산) 제1항 ⁶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제6항 ⁷	
연금수급요건 및 지급개시 연령	2016년 이전	20년/60세	20년/60세	20년
	2016년 이후	10년/65세	10년/65세	20년

주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2010년 가입자부터 65세적용, 2016년 이후, 모든 가입자단계별로 적용됨(22년 61세→24년 62세→27년 63세→30년 64세→33년 65세).

5.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6. 퇴직한 교직원·공무원 또는 군인(이 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고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7.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법」·「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제1항의 복무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 가입기간 연계제도

공적연금의 노후생활 보장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9년 2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총 20년 이상이면 단일 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양 제도로부터 모두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 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방식은 각 연금의 고유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형태로 도입되었다. 즉,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는 각각의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므로 연금 간 상호 재정이전이나 부담이 없는 ‘연결통상’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에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 연간지급률(근로소득의 1.75%~1.0%)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 만큼은 직역연금 연간지급률(보수월액의 2%)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적용대상자는 2008년 8월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직역연금제도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시 연계 희망자는 직역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면 된다.⁸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경우는 60세가 되는 시점에 연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연계연금은 60세가 되었을 때 본인이 가입이력이 있는 어떠한 기관에서든 가능하며, 연금 지급은 본인이 가입한 각 기관에서 지급하게 된다.

〈표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2009년)

구분	적용대상 및 방법	세부내용
연계 신청	선택	1. 직역연금 퇴직일시금 수령자가 다른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 가입 시 2년 이내 반납 후 연계신청 가능 2.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신청
연계 대상자	공적연금 가입 합산기간이 20년 이상인 자	1.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자는 반환일시금 지급, 직역연금은 퇴직일시금 지급 2. 소득이 있는 경우 재직자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 적용 3. 분할연금 적용

8.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연계를 신청하지 않고 일시금을 받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후 2년 이내에 일시금을 반납한 후 연계를 신청하면 연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표 2〉(계속)

구분	적용대상 및 방법	세부내용
연계연금 급여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¹⁾	1.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크레딧, 조기노령연금은 비적용 2. 국민연금의 임의계속 가입기간은 대상제외 3. 중복기간은 먼저 가입한 연금만 인정하고, 중복 제외된 기간도 급여액 산정에는 포함
연금수급 연령	60세로 통일 ²⁾	1. 2013년 이후 국민 상황조정 적용 2. 직역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퇴직연금 받으면 유족연금 1/2 감액(1/2감액한 유족연금이 본인의 퇴직연금보다 크다면 유족연금만 전액 지급과 선택)
적용 시기	법 시행이후 연금간 이동자	〈예외적인 적용대상〉 1. 2007.07.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공적연금으로 이동한 자 2. 이 법 공포일 2009.2.6. 현재 각 연금가입자 또는 공포일 이후 가입한 자가 공포일로부터 시행일(2009.8.6.) 전까지 이동을 하는 경우

주 : 1) 각 직역연금의 지급률 적용, 장애연금은 제외

2) 직역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더 늦는 경우는 직역연금에 따름

연계제도와 관련하여 기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특수직역연금 재직기간의 총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인 각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유지되고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2016년 1월 1일)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신청 대상·시기 등이 확대되었다. 첫째, 연계신청대상이 확대되어 가입자 자격 상실의 경우 별도로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해야 연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까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어 신청과정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둘째, 연계신청 시기를 확대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상실 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시 직역연금 퇴직 시 또는 60세 도달 시에만 연계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제도 개선 이후 직역연금 가입 시 바로 연계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기존 특수직역연금에서 20년 미만 재직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라도 총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부 특수직역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이 완화되며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연금과 군인연금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여전히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존재하게 된다. 첫째, 현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별정직연금의 경우 각 10년 이상 가입 시 개별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9년, 공무원연금/사학연금/별정직연금의 재직기간 9년인 가입자의 경우 총 가입기간은 18년으로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되지만, 연계연금제도 이용을 위한 합산기간이 20년에 달하지 못하므로 연계연금을 수급할 수 없다. 둘째, 군인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20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사학/별정직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군인연금을 15년 가입한 자와 사학연금을 15년 가입한 자 간의 수급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2016년 이전)

국민연금 가입기간	특수직역연금 재직기간	총 가입기간 (가입기간+재직기간)	연계법에 의한 급여지급
1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X (개별 연금법에 의한 연금 수급)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미만	X
		20년 이상	O
10년 미만	20년 이상	20년 이상	O (국민연금 수급 가능)
10년 미만	20년 미만	20년 미만	X
		20년 이상	O

〈표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 (2016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공무원/사학/별정			군인연금		
	공무원/사학/별정재직기간	총가입기간 (가입기간+재직기간)	연계법에 의한 급여지급	군인연금 재직기간	총가입기간 (가입기간+재직기간)	연계법에 의한 급여지급 대상
10년이상	10년이상	20년이상	X (개별 연금법에 의한 연금 수급)	20년이상	20년이상	X (개별 연금법에 의한 연금 수급)
10년이상	10년미만	20년미만	X	20년미만	20년미만	X
		20년이상	O		20년이상	O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X	20년이상	20년이상	O (국민연금 수급 가능)
		20년이상	O (국민연금 수급 가능)			
10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X	20년미만	20년미만	X
					20년이상	O

2. 선행연구

고철기 외(1990)는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 시기에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하였다. 동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미비로 가입기간 미충족에 따른 연금권 확보의 어려움, 재취업기관의 성격에 따른 개인간의 득실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제도와 변천과장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계방식을 연결통산방식, 완전통산방식, 통합방식으로 구분하여 각 방식별 장단점을 비교한 후 각 제도의 도입이념과 제도간 재원이관의 필요성이 없어 제정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단순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연결통산방식이 문제점이 가장 적은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액급여와 소득비례급여 기능을 수행하고, 직역연금이 소득비례의 역할만 수행하는 2층적 구조로 갈 경우 통합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민재성·김용하(1994)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통합하고, 각 연금제도별로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두는 형태로 연계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연계는 중복급여, 급여조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각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연결통산방식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통합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직역연금의 연금수급연령과 보수산정기준을 국민연금과 동일하도록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용하(2001)는 일본, 독일, 미국 등 3개 국가의 연계제도를 분석하고, 각국의 연계방식을 유형화하여 보편성, 급여의 적정성 및 형평성, 제정에 미치는 영향,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국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제도 미흡으로 연금사각지대 문제, 노동이동의 제약 문제, 제도간 이동시 개인별 노후소득 보장의 공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하였다. 동 연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계비용,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비대칭형 완전통산방식인 소급보험료 납부방식이 단기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하며, 특수직역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급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소득산정 방식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남기창(2016)은 독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국내 국민연금 연계제도를 비교하여 연계제도의 활성화 대책과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한국보다 노후보장의 수단으로서 일시금 형태보다는 연금형태 지급을 지향하고 연금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적 연금간 연계제도 적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하여 운영하며, 퇴직일시금 혹은 반환일시금의 형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도 연계제도 적용을 의무제도로 운영시 연계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모든 개인은 장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은퇴 후 종신까지 일정 소득 또는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연금은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저축하는 형태로 개인의 장수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을 선택하는 연금 퍼즐(annuity puzzle)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연금퍼즐 현상에 대한 원인은 제도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제도적 요인은 일시금 옵션의 유무, 즉 자산을 연금화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경우, 연금규모 자체가 적게 되어 연금에 대한 선호도와 더불어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둘째로 개인적 요인은 개인이 현재 소득을 미래로 이연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으로서, 유산상속 동기, 다른 노후재산의 존재, 의료비용의 지출, 자금의 유동성, 개인별 미래에 대한 할인을 등이 제시되고 있다.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 행위 또는 연금퍼즐에 대한 실증 연구는 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연계제도 상 일시금과 연금의 선택을 다룬 연구는 없다. 국내외 대부분의 공적연금은 의무적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실정으로 공적 연금간 연계제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성숙한 가운데 은퇴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의 개인간 선택에 관한 미시데이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Büttler and Teppa(2007)는 1996~2006년 스위스의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퇴직시 개인의 연금과 일시금 선택 행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효용가치를 Annuity Equivalent Wealth(AEW)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AEW가 커질수록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AEW 1%p 상승시 여성의 연금선택확률은 1.5%p 상승하는 반면 남성의 연금선택확률은 0.5%p 상승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연금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축적한 연금자산 규모와 연금선택확률(연금전환율) 간에서는 역U자 관계가 존재하여 일정 수준 이하로 축적된 연금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미만으로 작을수록 일시금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은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혼 또는 사별한 남성이 미혼 남성에 비하여 연금 선택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동 논문은 연금전화에 있어서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스위스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종신연금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데,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이 연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연금선택확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Finkelstein and Poterba(2004)는 영국 연금시장의 가입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의 기대여명과 연금 특성 간 구조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연금지급 옵션에 있어서 연금선택자가

연금 비선택자에 비하여 수명이 더 긴 역선택 현상을 발견하였다. 자발적 연금시장 가입자들이 의무적 연금시장 가입자에 비하여 남성 비율이 낮으며, 가입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초기 보험료 납입 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발적 연금시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위험 개인이 높은 기대여명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장으로, 자신의 기대여명 등 개인이 사적 정보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수명이 긴 사람의 경우 연금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증가형(back-loaded)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Previtiero(2011)은 10만명 이상의 미국 DB Plan 가입자가 은퇴 시점에 일시금과 주식수익률 등에 무관하게 연금지급액이 고정되어 있는 확정형 연금을 선택하는 실제 행태를 분석하였다. 연금과 일시금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개인의 연금전환선택은 과거 주식수익률과 연령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과거 주식수익률과 연금전환을 간 음(-)의 관계가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인지력과 기억력 감퇴 등으로 최근의 정보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게 되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제3장 연금가입 특성과 연계연금 선택행동 분석

1. 자료특성과 기초통계

본 연구는 사학연금 퇴직자 중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계연금 선택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학연금의 퇴직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생년월일, 성별, 교직원 구분, 학교급, 임용일과 퇴직일, 급여종류, 연계연금 선택 시 연계연금 개시연월과 연금월액, 일시금 선택 시 지급받는 퇴직수당액과 일시금 규모이다. 대상은 2009년~2015년 총 144,770명 퇴직자로 한다. 이중 일시금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144,457명인 반면, 연계연금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355명에 불과하다.

연계연금과 퇴직일시금 수급자의 청구연도별 10년 이상 재직자와 10년 미만 재직자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퇴직자의 0.25%에 해당하는 355명이 퇴직 시 연계연금을 선택하였으며, 이중 221명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하였고, 134명은 10년 미만 재직하였다. 연계연금제도는 2009년부터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연계연금을 선택한 사람은 2011년부터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그 수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

퇴직일시금 수급의 경우 해당 청구년이 각각 상이하야 이를 현가화해야 하며, 연계연금 역시 연금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시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므로 2015년 생명표를 기준으로 기대사망연령까지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여 2015년 말 기준으로 현가화 하였다.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 별도로 근로보상 성격의 급여인 퇴직수당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퇴직자가 수급하게 되는 퇴직수당 역시 현가화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9. 퇴직수당은 민간기업의 퇴직금 제도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인 급여로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교직원 및 그 유족에게 연금급여와 별도로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표 5〉 연도별 연계연금/퇴직일시금 수급자 추이

청구년도	연계연금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2009	0	0	0	19,663	805	20,468
2010	0	0	0	22,517	915	23,432
2011	6	7	13	22,401	993	23,394
2012	28	70	98	24,947	973	25,920
2013	10	5	15	16,105	914	17,019
2014	33	66	99	15,905	877	16,782
2015	57	73	130	16,572	870	17,442
Total	134	221	355	138,110	6,347	144,457

이에 따라 연계연금과 퇴직일시금 수급자간 성별, 연령(2016년 기준), 교원 여부, 소속 학교급, 재직기간, 연금수급까지의 대기기간,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연금액의 현가를 비교하였다(〈표 6〉).

이를 보면 첫째, 연계연금 선택자의 경우 83%가 남성인 반면, 퇴직일시금은 27%가 남성으로 연계연금 선택자의 남성 비중이 높다. 즉, 사학연금의 경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사학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와 이에 비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더불어 남녀 간 노동양태의 차이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인 것이다(주소현·정순희·최혜경, 2010; 김경아 2015, 유희원·이주환·김성욱, 2016).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놓이게 되므로 국민연금 제도에서 연금수급권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유희원·이주환·김성욱, 2016)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남성가입자에 비하여 여성가입자가 저임금과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으며, 연금수급자격 충족율이 낮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우 사학연금에 부담금을 납부하지만 연금수급이라는 제도의 혜택에서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조정은, 2016).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사학연금의 연금 수급권 뿐만아니라 연계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제약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16년 기준 연계연금 선택자의 평균연령은 63.3세인 반면 퇴직일시금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40.0세로 차이가 23.3세가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 시 연령으로 살펴보면 일시금 수급자의 평균연령이 31.8세인 반면 연계연금 선택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60.9세로 29.1세의 차이가

발생하여, 연계연금 선택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 연금 수급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연계연금 선택자 중 19%가 교원인 반면, 퇴직일시금은 56%가 교원으로 연계연금 선택자의 교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넷째, 소속 학급을 살펴보면 연계연금 선택자는 퇴직일시금 수급자 간 소속 학급에 차이가 발생한다. 두 집단 모두 대학교에 재직인 사람 비중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연계연금 선택자는 50%가 대학교, 24%가 전문대학, 19%가 중고등학교에 재직하여 대학교, 전문대학, 중고등학교 재직자 비중이 93%에 달한다. 반면, 퇴직일시금 수급자는 대학교가 59%, 유치원이 29%, 전문대학이 9%를 차지하여 대학교, 유치원, 전문대학 재직자 비중이 97%에 달한다.

다섯째, 연계연금 선택자와 퇴직일시금 수급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각각 138.3개월, 36.5개월로 연계연금 선택자의 재직기간이 더욱 긴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연계연금 선택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65.5개월인데 비하여 퇴직일시금 수급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7개월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반면, 1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연계연금 선택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182.3개월이고, 퇴직일시금 수급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161.5개월로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연계연금 선택자와 퇴직일시금 수급자가 퇴직 이후 받게 되는 모든 급여 총합계의 평균값은 각각 2억 1,900만원, 1,180만원으로 나타나, 연계연금 선택자의 급여 총 합계액이 퇴직일시금 수급자에 비하여 18.6배 높은 수준이다. 연계연금 선택자는 퇴직수당이나 일시금을 수급하지 않고 모든 급여를 연금형태로 수급 받으며, 10년 미만 재직자는 연금수급도달 연령이후 사망 시까지 1억 5,900만원을 받는 반면, 10년 이상 재직자는 2억 5,600만원을 받는다. 퇴직일시금 수급자는 퇴직일시금과 더불어 퇴직수당을 퇴직시점에 수령하게 되는데 평균 퇴직일시금 수급액은 1,010만원이며, 퇴직수당은 171만원을 받는다. 한편 퇴직일시금 수급자 중 10년 미만 재직자는 퇴직시 평균 856만원(퇴직일시금은 756만원과 퇴직수당 99.5만원을 받는 반면, 10년 이상 재직자는 8,260만원(퇴직일시금 6,540만원과 퇴직수당 1,720만원)을 받으므로 퇴직일시금 규모에서도 격차가 존재한다.

〈표 6〉 연계연금/퇴직일시금 수급자 기초통계(평균값)

변수	연계연금			퇴직일시금		
	10년 미만 (134명)	10년 이상 (221명)	계 (355명)	10년 미만 (138,110명)	10년 이상 (6,347명)	계 (144,457명)
남성	0.92	0.77	0.83	0.27	0.42	0.27
연령(퇴직시점)	61.1	60.7	60.9	31.2	44.9	31.8
재직기간	65.5	182.3	138.3	30.7	161.5	36.5
일시금 현가	0	0	0	756.4	6539.9	1010.5
퇴직수당 현가	0	0	0	99.5	1722.6	170.8
연금액 현가	15917.5	25568.9	21925.9	0	0	0
급여 총합계	15917.5	25568.9	21925.9	855.9	8262.6	1181.4
교원여부	0.39	0.07	0.19	0.56	0.46	0.56
유치원	0.04	0.00	0.02	0.30	0.10	0.29
초등학교	0.00	0.02	0.01	0.00	0.02	0.00
중고등학교	0.13	0.23	0.19	0.02	0.19	0.03
전문대학	0.33	0.19	0.24	0.09	0.11	0.09
대학교	0.45	0.53	0.50	0.59	0.56	0.59
특수학교	0.01	0.02	0.02	0.00	0.02	0.00
법인	0.04	0.01	0.02	0.00	0.01	0.00

다음으로는 퇴직일시금과 연계연금 선택자에 대하여 연령별, 성별, 교원 여부, 학교급별에 따른 수급액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50대 및 70대에 속한 모든 퇴직자는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퇴직일시금을 수급하고 있다. 60대의 퇴직자중 89%(2,861명)는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고, 11%(355명)가 연계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연계연금 선택자 중 37.7%(134명)는 10년 미만, 62.3%(221명)는 10년 이상 재직하였다.

총수급액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경우 총수급액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대의 경우 평균 총수급액인 1,232만원의 40%수준인 443만원을 퇴직시점에 지급받으며, 30대 이후에는 평균 총수급액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60대의 경우 평균 총수급액 규모는 7,000만원 수준이나, 퇴직일시금 수급자는 평균 5,148만원을 수급 받는 반면, 연계연금 선택자의 총수급액은 2억 1,925만원으로 퇴직일시금 수급자보다 약 4배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60대의 경우 10년 미만 재직자 중 2,108명은 퇴직일시금으로 2,455만원을 퇴직 시 지급받지만, 134명의 연계연금 선택자는 1억 5,917만원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그리고 10년 이상 재직자 중 일시금 선택자(753명)은 1억 2,687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반면, 연계연금 선택자(221명)는 2억 5,569만원을 연금으로 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50대에 속하여 연금수급까지 대기기간이 긴 퇴직자는 평균적으로 총 수급금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모두가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60대의 경우 연계연금 선택자의 총수급액 규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70대인 퇴직자의 경우 모두 일시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이는 예상 생존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연령별/구간별 연계연금 가입 현황 및 수급액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10년 미만	74,501	46,658	10,150	4,587	2,242	106	138,244
일시금	74,501	46,658	10,150	4,587	2,108	106	138,110
연계연금	0	0	0	0	134	0	134
10년 이상	11	2,592	1,813	1,142	974	36	6,568
일시금	11	2,592	1,813	1,142	753	36	6,347
연계연금	0	0	0	0	221	0	221
Total	74,512	49,250	11,963	5,729	3,216	142	144,812
일시금	74,512	49,250	11,963	5,729	2,861	142	144,457
연계연금	0	0	0	0	355	0	355

(단위: 만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Total
10년 미만	442.8	1,241.1	1,493.4	1,437.3	3,259.8	3,633.8	870.5
일시금	442.8	1,241.1	1,493.4	1,437.3	2,455.2	3,633.8	855.9
연계연금	0	0	0	0	15,917.4	0	15,917.4
10년 이상	3,887.3	5,897.4	9,230.2	9,091.5	15,610.0	12,315.7	8,844.9
일시금	3,887.3	5,897.4	9,230.2	9,091.5	12,687.2	12,315.7	8,262.6
연계연금	0	0	0	0	25,569.0	0	25,569.0
Total	443.4	1,486.2	2,665.9	2,963.1	7,000.2	5,834.8	1,232.2
일시금	443.4	1,486.2	2,665.9	2,963.1	5,148.2	5,834.8	1,181.4
연계연금	0	0	0	0	21,925.9	0	21,925.9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퇴직자 중 72.7%(105,211명)가 여성이며,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총수급액은 각각 924.9만원, 2,048.8만원으로 여성의 평균 총수급액의 남성의 평균 총수급액 규모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일시금 수급 여성과 남성의 평균 총수급액 역시 약 2배가량 차이가 존재하는데, 연계연금의 경우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계연금 선택 여성과 남성의 총수급액은 각각 2억 4,624만원, 2억 1,354만원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269만원 높으며, 여성의 연계연금 수급액이

남성의 연계연금 수급액 보다 높은 경향은 근무기간이 10년 미만과 10년 이상 모두에서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년 미만 근무한 퇴직자 138,244명 중 여성은 73%(101,493명)에 달하며 이중 일시금 수급자 101,482명은 평균 693만원을 수급하는 반면, 연계연금 선택자 11명은 평균 1억 5,92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중 6,568명 중 57%(3,718명)이 여성으로 이중 일시금 수급자 3,667명은 평균 6,924만원을 수급 받는 반면, 연계연금 선택자 51명은 평균 2억 6,501억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표 8〉 성별/구간별 연계연금 가입 현황 및 수급액

(단위: 명)

구분	일시금	연계연금	Total
10년 미만	138,110	134	138,244
여성	101,482	11	101,493
남성	36,628	123	36,751
10년 이상	6,347	221	6,568
여성	3,667	51	3,718
남성	2,680	170	2,850
Total	144,457	355	144,812
여성	105,149	62	105,211
남성	39,308	293	39,601

(단위: 만원)

구분	일시금	연계연금	Total
10년 미만	855.9	15,917.4	870.5
여성	693.6	15,922.4	695.2
남성	1,305.7	15,917.0	1,354.6
10년 이상	8,262.6	25,569.0	8,844.9
여성	6,924.5	26,501.1	7,193.1
남성	10,093.3	25,289.4	10,999.8
Total	1,181.4	21,925.9	1,232.2
여성	910.9	24,624.2	924.9
남성	1,904.9	21,354.9	2,048.8

교원과 직원별로 살펴보면, 일시금 수급자에 비하여 연계연금 선택자의 총수급액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전체 직원의 일시금 수급액은 1,181만원인 반면, 연계연금 선택자의 총수급액은

2억 1,9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원보다는 교원의 총수급액이 낮은 수준으로 직원과 교원의 일시금 수급액은 각각 1,307만원, 1,081만원으로 나타나며, 연계연금의 경우도 직원과 교원의 수급액은 각각 2억 2,168만원 2억 902만원으로 직원의 수급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

〈표 9〉 교원여부/구간별 연계연금 가입 현황 및 수급액

(단위: 명)

구분	일시금	연계연금	Total
10년 미만	138,110	134	138,244
직원	60,393	82	60,475
교원	77,717	52	77,769
10년 이상	6,347	221	6,568
직원	3,447	205	3,652
교원	2,900	16	2,916
Total	144,457	355	144,812
직원	63,840	287	64,127
교원	80,617	68	80,685

(단위: 만원)

구분	일시금	연계연금	Total
10년 미만	855.9	15,917.4	870.5
직원	986.1	14,901.0	1,005.0
교원	754.8	17,520.3	766.0
10년 이상	8,262.6	25,569.0	8,844.9
직원	6,935.0	25,075.4	7,953.2
교원	9,840.6	31,893.3	9,961.6
Total	1,181.4	21,925.9	1,232.2
직원	1,307.3	22,168.4	1,400.7
교원	1,081.6	20,902.1	1,098.3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전체 퇴직자의 59%가 대학교, 29%가 유치원에 재직한 자로 구성된다. 특히, 대학교에서 근무한 퇴직자 중 177명은 연계연금을 선택하여 연계연금 선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소속 퇴직자 중 연계연금 신청자는 각각 46명, 22명, 전문대학교는 85명으로 나타난다.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학교 순으로

선택자수가 많다. 수급액 기준으로 연계연금의 경우 특수학교, 대학교, 법인, 전문대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시금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법인, 대학교, 전문대학교, 유치원 순으로 나타나며 유치원 퇴직자의 경우 687만원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학교급별/구간별 연계연금 가입 현황 및 수급액

(단위: 명)

학교급별	10년 미만			10년 이상			Total		
	전체	일시금	연계연금	전체	일시금	연계연금	전체	일시금	연계연금
유치원	41,168	41,162	6	647	647	0	41,815	41,809	6
초등학교	326	326	0	118	113	5	444	439	5
중학교	585	581	4	395	377	18	980	958	22
고등학교	2,200	2,186	14	872	840	32	3,072	3,026	46
전문대학	11,870	11,826	44	712	671	41	12,582	12,497	85
대학교	81,428	81,368	60	3,653	3,536	117	85,081	84,904	177
특수학교	356	355	1	134	129	5	490	484	6
법인	311	306	5	37	34	3	348	340	8
Total	138,244	138,110	134	6,568	6,347	221	144,812	144,457	355

(단위: 만원)

학교급별	10년 미만			10년 이상			Total		
	전체	일시금	연계연금	전체	일시금	연계연금	전체	일시금	연계연금
유치원	619.1	616.9	15,693.4	5,167.9	5,167.9	0	689.5	687.4	15,693.4
초등학교	2,774.7	2,774.7	0	9,948.4	9,503.4	20,005.9	4,681.2	4,506.7	20,005.9
중학교	1,957.9	1,932.8	5,615.2	8,754.8	8,113.6	22,184.8	4,697.5	4,365.1	19,172.1
고등학교	1,850.5	1,778.9	13,032.7	9,034.2	8,570.0	21,219.2	3,889.6	3,664.1	18,727.6
전문대학	774.4	723.0	14,576.0	10,704.4	9,720.1	26,812.7	1,336.3	1,206.1	20,478.4
대학교	962.2	950.0	17,464.7	9,070.1	8,473.5	27,101.2	1,310.3	1,263.4	23,834.6
특수학교	1,875.1	1,766.1	40,545.0	8,576.2	7,831.1	27,799.9	3,707.6	3,382.6	29,924.1
법인	1,692.1	1,379.6	20,817.1	9,079.0	8,020.6	21,074.4	2,477.5	2,043.7	20,913.6
Total	870.5	855.9	15,917.4	8,844.9	8,262.6	25,569.0	1,232.2	1,181.4	21,925.9

2. 연계연금 선택행동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일시금을 선택한 가입자 대비 연금을 선택한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가입자의 연금선택은 이항변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계연금을 선택하면 종속변수를 1로 두고, 일시금을 선택하면 종속변수를 0으로 두었다. 구체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 = \beta_0 + \beta_1 Sex_i + \beta_2 Age_i + \beta_3 Age^2 + \beta_4 sd_1 + \beta_5 workpd \\ + \beta_6 \ln(i) + \beta_7 sd_2 + \beta_8 sd_3 + \beta_9 sd_4 + \epsilon$$

구체적인 가설로서는 첫째, 남성일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하며, 둘째, 연령과 연계연금 선택 간에는 정(+)의 관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 수급까지의 대기기간이 짧고, discount value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셋째, 재직기간과 연계연금 선택 간에는 정(+)의 관계를 보이며, 넷째, 소득수준과 연계연금 선택 간에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가설로 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소득을 미래로 이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퇴직자 대상 로짓 분석 결과, 주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성별, 연령, 재직기간, 소득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변수 값이 도출되는데, 모형 1과 모형 2 모두 교원인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회귀계수 값이 도출되어, 교원인 경우 연금선택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학교급을 포함한 모형 2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치원에 재직 시 연계연금 선택확률이 낮아지며, 전문대 및 대학교 재직 시 연계연금 선택확률이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1〉 회귀분석 1 : 전체 대상

구분	모형1	모형2
성별(남성=1, 여성=0)	0.730*** [0.190]	0.810*** [0.205]
연령	59.53*** [5.356]	60.26*** [5.147]
연령*연령	-0.483*** [0.0438]	-0.489*** [0.0421]

〈표 11 계속〉

구분	모형1	모형2
교원여부(교원=1, 직원=0)	-1.799***	-1.922***
	[0.198]	[0.204]
재직기간	0.00896***	0.00865***
	[0.00110]	[0.00120]
ln(퇴직시점소득)	1.038***	0.509***
	[0.148]	[0.164]
유치원(더미)		-1.851***
		[0.470]
전문대학/대학교(더미)		0.583***
		[0.181]
특수학교(더미)		-0.425
		[0.515]
법인(더미)		-0.0904
		[0.530]
Constant	-1,851***	-1,868***
	[163.7]	[157.4]
Observations	144,769	144,769

주 : *** p<0.01, ** p<0.05, * p<0.1

10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는 로짓 분석 결과 그룹별로 주요 가설지지에 대해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우선 10년 이상 재직자 대상 모형 3과 모형 4의 결과, 성별, 연령, 재직기간, 소득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회귀계수 값이 도출되는데, 전체 대상 분석(모형 1과 모형 2)과 마찬가지로 교원인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회귀계수 값이 도출되어, 교원인 경우 연금선택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학교급을 포함한 모형 4의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유치원에 재직 시 연금연급 선택확률이 낮아지며, 5% 유의수준에서 전문대 및 대학교 재직 시 연금연급 선택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0년 미만 재직자 대상 모형 5와 모형 6의 결과, 연령만이 1%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회귀계수 값이 도출된다. 모형 5와 모형 6 모두, 교원인 경우 1% 유의수준에서 음(-)의 회귀계수 값이 도출되었다. 모형 5의 경우, 재직기간과 퇴직시점의 소득에 대하여 각각 10%, 1% 유의수준에서 연금연급 선택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면, 반면 모형 6의 경우 학교급을 고려할 경우 재직기간과 퇴직시점 소득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모형 6의 경우 유치원(더미) 변수가 모두 제거(omitted)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2〉 회귀분석 2 : 10년 기준 적용

구분	10년 이상 재직자		10년 미만 재직자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성별(남성=1, 여성=0)	1,112*** [0,334]	1,089*** [0,343]	0,448 [0,274]	0,49 [0,299]
연령	43,59*** [5,207]	46,04*** [5,243]	178,9*** [27,43]	180,1*** [27,86]
연령*연령	-0,353*** [0,0423]	-0,373*** [0,0425]	-1,467*** [0,226]	-1,477*** [0,229]
교원여부(교원=1, 직원=0)	-1,205*** [0,241]	-1,505*** [0,251]	-2,031*** [0,403]	-1,764*** [0,417]
재직기간	0,0182*** [0,00308]	0,0191*** [0,00317]	0,00647* [0,00365]	0,00501 [0,00386]
ln(퇴직시점소득)	1,071*** [0,178]	0,596*** [0,198]	0,922*** [0,306]	0,42 [0,345]
유치원(더미)		-1,357** [0,533]		
전문대학/대학교(더미)		0,755** [0,310]		0,274 [0,258]
특수학교(더미)		0,182 [1,088]		-0,601 [0,626]
법인(더미)		0,441 [0,685]		-0,564 [0,927]
Constant	-1,363*** [160,5]	-1,434*** [161,7]	-5,470*** [832,7]	-5,500*** [845,6]
Observations	138,237	138,237	6,532	5,885

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실제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선택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제한적 정보이기는 하나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연계연금 선택자와 일시금 선택자간의 가입행동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학연금 퇴직자 중 연계연금선택과 일시금 선택행동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직기간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퇴직자 중 직원인 경우 연계연금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의 경우,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재직기간(2016년 이전 20년)을 충족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 즉, 교원이 최소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을 받아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의 경우 연계연금 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남녀 간 노동양태의 차이, 즉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임금이 낮고 불안정성이 높으며, 남성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직종 또는 직무에 종사하는 특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셋째, 사학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개인 소득에 따른 기여와 이에 비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기가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사학연금은 가입자 부담금이 큰 대신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은 연금수급권자에 한정된 혜택일 뿐,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가입자는 높은 부담금을 납부한 채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 내에서도 저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연금수급권 확보율이 낮은 계층은 사학연금에 부담금 납부의 의무만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학교급과 관련하여 10년 미만의 재직자 대상 분석 시 유치원 재직자가 분석에서 제외되며, 동시에 재직기간, 소득 변수가 유의하지 않는데, 이는 사학연금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가입비율이 월등히 높으나, 직무와 학교급 별로 사학연금제도 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저임금-정규직 등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되어 남성에 비하여 사학연금의 연금수급권 확보가능성과 더불어

이후 연계연금 수급권 확보에 제약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연계연금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강성호, 2011). 저임금·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높은 여성 및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연금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첫째, 사학연금·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이 10년인 상황에서 연계연금의 합산가입기간은 20년으로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연계연금을 선택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연계연금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일 제도를 고려하여 연계연금을 강제화하거나(남기창, 2016) 직역연금에서 퇴직 시 일시금을 수급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령이 높은 가입자의 경우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을 물리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령 상승과 더불어 연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20년을 채울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 허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1), 「공적연금 연계 현황과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17 No,2, pp. 7~37.
- 김린(2014), 「지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관점에서의 소고 -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pp. 5~51.
- 김수완(2005), 「여성의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국가간 비교 연구 : 한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pp. 85~118.
- 고철기 · 오영호 · 김성희(1990),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아(2015), 「국내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확대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제37권, pp. 1~9.
- 남기창(2016), 「국민연금 연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독일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중심으로」, 경상논총 제34권 제2호, pp. 19~41.
- 석재은(2004), 「연금의 성별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보건사회연구, 제24권 제1호, pp. 93~129.
- 박찬웅(2011), 「국민연금가입요인에 관한 성별격차 : 다수준분석기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4호, pp. 1~24.
- 유희원 · 이주환 · 김성욱(2016), 「국민연금의 성별격차 : 남녀 간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43권 제1호 pp. 27~41.
- 윤석명 · 신화연(2011),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제95호 pp. 1~8.
- 이용하(2001),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 간 연계 및 조화방안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조정은(2016), 「사학연금의 성별격차에 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6권 제1호, pp. 125~146.

참고문헌

- 주소현 · 정순희 · 최혜경(2010), 「여성의 노후소득 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주소현 · 정순희 · 최혜경(2012), 「개인연금 가입자의 연금화 의향 분석」, 한국소비자학회 2012년 소비자분야 통합학술대회, pp. 419~423.
- Büttler, M., Teppa, F., 2007, The choice between an annuity and a lump sum: Results from Swiss pension fun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91, Issue 10, 1944-1966.
- Finkelstein, A., Poterba, J., 2004, Adverse Selection in Insurance Markets: Policyholder Evidence from the U.K. Annuity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12 No.1, 183-208.
- Previtero, A., 2011, Stock market returns and annuitization,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113, Issue 2, 202-214.